

제공일자	2015. 2. 26(목)	담당자	정봉은 연구위원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21	총 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』 보고서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정봉은 연구위원은 『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』 보고서에서 보험회사에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치매신탁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.
- 경증치매자는 1)신체중심의 등급평가 구조상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, 2)가족 내 주수발자가 없거나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하고, 3)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에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만 지원하므로 보호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.
- 또한, 민영보험에서도 경증치매는 대부분 보장하지 않고 있어, 결국 공·사보험 및 사회제도상에서 사각지대화되어 있음.
- 보험연구원은 경증치매를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본인 스스로 치매신탁에 가입하고 임의후견인을 선임·활용하여 치매발병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치매신탁상품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.

□ 치매의 자연경과를 「경도인지장애→경증치매→중증치매→고도치매→종말기 치매」로 분류 시, 치매와 정상인의 중간상태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 중 28%로 약 178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, 대체로 이 중 매년 10~15%가 경증치매로 전환되므로 미리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.

- 고령화사회의 가속화에 따라 치매와 정상의 중간수준인 경도인지장애자가 급증하나 미래 치매발병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.

- 치매발병 시 경증치매자 중 일부만 치매특별등급(등급외 A자)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등급외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음.
 - 경증치매를 보호해 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(43%)나 주수발자의 고령화(61.3세)로 가족 수발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.
 - 가족의 수발 중에 경증치매자의 배회와 실종, 학대와 방임, 치매살인 및 자살, 수발을 위한 근로단축 또는 근로상실, 높은 비용부담으로 병원입소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기도 함.
-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경증치매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, 보험 회사에 치매신탁상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.
- 경증치매자가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 시 경증치매기에 요양비용으로 매월 15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, 경증치매기를 3년간으로 볼 경우 경증치매기 동안에 약 5천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.
 - 경증치매신탁의 구조는 경증치매기의 요양비 소요액을 치매신탁에 위탁해 두고 치매발병 시 신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신탁교부금을 지급받아 치료·요양하는 구조임.
 - 경증치매 발병 시 신탁수익자인 본인을 인지저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치매신탁계약 체결 시 임의후견인을 선임해 두었다가 발병 시 임의후견인을 통하여 신탁교부금을 정확히 수령하고 치료·요양 등 신상보호에 활용토록 함.
 - 임의후견인은 주로 가족이나 변호사·법무사·사회복지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되어 후견인업무를 수행하며, 치매발병 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임의후견인의 업무가 개시되므로 가족이나 주변의 재산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.

– 신탁기간은 경증치매의 유병기간을 감안할 때 4~9년이 적절하며, 치매 발병 후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신탁금의 지급은 일본의 후견 제도지원신탁과 같이 원금훼손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.

□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사의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하여 고객발굴 및 이용권유에 나선다면 효과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

- 보험사는 영업방식이 기본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판매(Out-bound) 중심 이어서 치매신탁이용 주대상자인 경도인지장애자의 발굴이 용이하며,
- 치매신탁의 권유가 단순한 신탁가입 권유만이 아니라 임의후견인의 선임 및 활용에 대한 조언 및 상담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적합함.
- 또한, 보험사는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보장 이외에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과 함께 경증기를 보장하는 신탁상품을 조합하여 토털마케팅 함으로써 치매보장에 공백이 없도록 보장설계할 수도 있을 것임.

□ 보험사에 치매신탁상품이 도입된다면, 그 동안 경증치매에 보호수단이 없었던 보호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.

- 보험사에 치매신탁이 도입, 활성화된다면 수많은 경도인지장애자와 국민들의 장래 경증치매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.

붙임 : 조사자료집 「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」 요약본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